

(AEO 기업 대상) 가공, 수선물품의 수출입신고 간소화 절차

2021년 4월

재무성 관세국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해 일본에서 수출되어 그 수출허가일로부터 1년(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수입되는 물품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관세·소비세가 경감된다.

AEO 수출자·통관업자가 행하는 수출신고, AEO 수입자·통관업자가 행하는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간소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注) 수출신고 시 해당 간소화절차를 적용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시에도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물품을 수출한 자가 수입해야 한다.

【감세 제도의 개요】

1. 대상 물품 (관세정률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및 제5조의2, 기본통달 11-1)

⇒ 가공 혹은 수선을 위해 수출되는 물품

(참고) 가공·수선이란

가공 : 물품에 공작을 가함으로써 해당 물품의 가치를 올리거나 하는 행위

(가공 후에 가공 전의 물품 특성을 보유하는 범위에 한한다.)

수선 : 물품의 기능 등이 저하된 것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행위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교환 포함)

(注1) 가공을 위한 것은, 일본에서 그 가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注2) 다음에 열거한 경우는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0호(재수입물품 무조건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

ㄱ. 가공 또는 수선을 위해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이 그 수출허가 시의 성질과 형상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 혹은 수선만 하고 수입된 물품

(예 : 나사조임, 기름 세척, 주유 등)

ㄴ. 일본에서 수출된 필름이 촬영 후 현상되지 않은 채 수입되는 경우

(개인사용 물품은 현상된 것도 포함한다.)

2. 적용개시일

2021년 4월 1일(목) 이후 수출 또는 수입신고(2021년 4월 1일 이전에 수출된 물품의 수입신고 포함)에 적용 가능하다.

3. 감세절차에 필요한 서류(수출)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조, 기본통달 11-3)

- (1) 「가공·수선 수출물품 확인신고서」(이하 「확인신고서」) 2부(원본, 교부용)
- (2) 수출무역관리령(1949년 정령 제378호) 제2조 제1항 제2호 《수출 승인》에 의거하여 발급된 수출승인증 혹은 가공·수선에 관한 계약서 1부
- (3) 동일성 확인을 위한 자료(사진, 카탈로그 등)
 - (注1) 계약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세관이 인정 한 때에는 계약서 외에 가공 혹은 수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외국 수출자 혹은 제조자와의 통신기록)로도 가능하다.
 - (注2) 식별기호 등에 의한 동일성 확인 시 세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출절차에서 동일성 확인을 위한 자료(사진, 카탈로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인보이스 등 수출관계 서류를 동일성 확인자료로 하는 경우, 수입절차에서 사용하도록 세관이 날인 후 반환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당 수출관계 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감세절차에 필요한 서류(수입)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조의2, 기본통달 11-4)

- (1) 수출된 물품의 수출허가서 혹은 이를 대체하는 세관의 증명서
- (2) 가공·수선에 관한 계약서 등
- (3) 「가공·수선·조립제품 감면세 명세서」 1부
- (4) 수출허가에 관한 세관관서의 확인을 받은 확인신고서

【AEO 수출자·수입자·통관업자를 위한 간소화 절차】(기본통달 11-6, 7)

<수출 시>

- (1) (확인신고서) 「교부용」은 수출신고 시 작성·제출 불요
- (2) (계약서 등) 수출신고 시 사본의 제출 또는 제시 가능
- (3) (동일성 확인자료) 인보이스 등 수출관계 서류를 동일성 확인자료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관은 해당 서류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기타 동일성 확인자료(사진, 카탈로그 등) 제출 불요(동 서류의 사본제출도 불요)

<수입 시>

- (1) 상기 4.(1) 및 (2)의 사본 제출 허용
- (2) (확인신고서) 수입신고 시 제시 불요